

2022학년도 2학기

대학원 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(대체)연구계획서 입력·제출 안내

1. 지도교수 배정

가. 입력기간: 2022.09.13.(화) ~ 2022.09.30.(금)까지[학과장(전공주임)이 배정]

나. 배정대상: 제2차 학기 재학생 또는 제2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않은 재학생 및 수료자

- ▷ 대학원 입학 두 번째(편입생은 첫 번째) 학기 재학생
- ▷ 두 번째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않은 재학생 및 수료자
- ▷ 학위청구논문(대체)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수료자 배정대상(지도교수가 기 배정된 학생 제외)

다. 배정방법

- 1) 지도교수는 소속학과(전공)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이 배정하며, 학과(전공)사무실에서 배정·입력
- 2)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(전공)사무실에 연락하여 요청
- 3)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를 지도교수로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: 첨부파일 외부지도교수 공동지도 추천서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(전공)사무실에 제출
- 4) 지도교수 배정 확인: 2022.10.11.(화)부터
 - 샘플포털시스템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학적정보→개인정보수정→지도교수란에서 확인·출력 지도교수 성명 확인
 - ※ 지도교수란이 공백으로 확인·출력되는 경우 학과(전공)사무실에 연락하여 배정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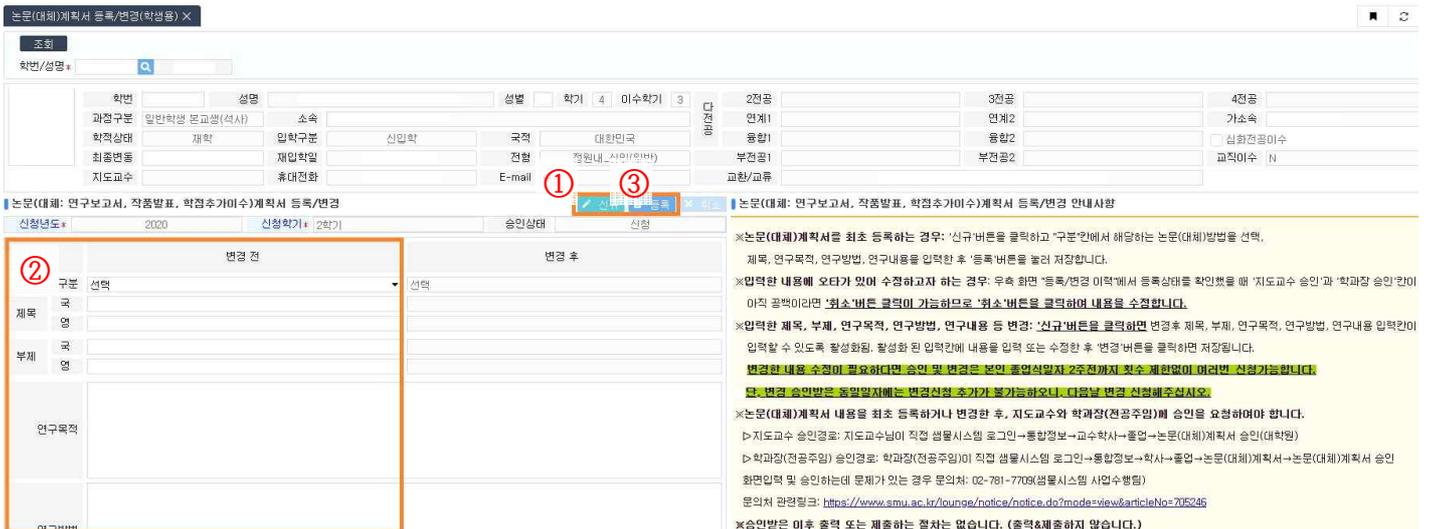
2. 논문(대체)연구계획서 입력

가. 입력기간: 2022.10.05.(수) ~ 2022.10.28.(금) [기간종료 후에도 입력 가능함]

나. 입력대상: 2022학년도 2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대학원생

다. 입력경로: 샘플포털시스템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계획서 등록/변경에서

- ① "신규"버튼을 클릭, ②구분을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(부제 입력은 선택사항),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간략히 입력한 후 ③ "등록"버튼을 클릭



※ 논문(대체)연구계획서 "구분"선택 가능범위

[소속학과(전공)에서 승인하지 않는 범위의 구분을 선택하는 경우 자동으로 "졸업논문"으로 변경함]

- ▶ 일반대학원: www.smu.ac.kr/grad/thesis/substitution.do#tab6882
- ▶ 교육대학원: www.smu.ac.kr/edu/exam/thesis05.do#tab6847

- ▶상담대학원: www.smu.ac.kr/wac/exam/thesis05.do#tab6717
- ▶경영대학원: www.smu.ac.kr/mft/exam/paper05.do#tab6497
- ▶문화기술대학원: www.smu.ac.kr/gsct/thesis/thesis05.do#tab6410

라.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기에는 향후 학위청구(졸업) 및 관련 규정[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1조(연구계획서)]에 의거하여 반드시 **논문(대체)연구계획서**를 입력.

3.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(신청기간 제한 없음)

지도교수 배정상태	변경희망	신청구분	신청절차
A교수	A교수→B교수	1대1변경	대학원생이 샘플포털시스템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지도교수변경요청에서 직접 신청하고 변경원을 출력하여 현재 지도교수와 희망 지도교수에게 제출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C교수, B교수	1대1변경	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C교수, D교수	1대1변경	
A교수	A교수→A교수, B교수	1대2변경	첨부파일 지도교수 변경원 서식을 작성하여 현재 지도교수와 희망 지도교수에게 제출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B교수	2대1변경	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A교수	2대1변경	

4. 관련 규정

가. 대학원 학칙

- 제33조(지도교수)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(교육중점트랙 제외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, 강사,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,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.
- ③지도교수는 적정한 지도학생을 유지하며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전공변경, 지도교수의 유고 및 논문주제의 변경 등 지도교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운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만약,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나.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- 제41조(연구계획서) ①학위청구자는 제2차 학기 내지 제3차 학기에 연구계획서(논문, 작품발표, 연구보고서 등) 또는 학점추가이수 계획서를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지도교수와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.
- 제42조(지도교수) ①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,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대상자별 지도교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2인의 교수가 공동지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학칙 제33조 1항 및 2항을 따른다.
- ③현재의 지도교수가 동의할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지도교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지도교수는 석사과정,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2개학기, 통합과정은 3개학기 논문(작품, 연구보고서)지도를 하여야 한다. 단, 학점추가 이수자는 예외로 한다.

- 붙임 1. 외부지도교수 공동지도 추천서 서식 1부.
2. 지도교수 변경원 서식 1부.
3. 대학원 학과(전공)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. 끝.

2022. 9.

대학원장
교육대학원장
통합심리치료대학원장
경영대학원장
문화기술대학원장